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연구

2019. 12.

제 출 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최병두

연 구 진

연구책임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공동연구

▌배순석_한반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훈_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준희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기태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예진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목 차

요약 ····· i

Ⅰ. 서론 ····· 1
1. 배경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범위와 내용 ····· 3
4. 연구 방법 ····· 3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적용 ····· 4
1. 국외 사례 ····· 4
1)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4
2) 영국 애버딘 시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가이드 ····· 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 ····· 8
4) 공공 정책에 대한 결과 기반의 인권영향평가(OPERA) ····· 10
2. 국내 사례 ····· 15
1) 광역지방자치단체 ····· 15
2) 기초자치단체 ····· 17
3.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20
1)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 20
2) 향후 개선 방안 ····· 20

Ⅲ.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결과 ····· 23
1.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23
1) 분야·항목·지표의 구성 ····· 24
2) 신규 평가항목 ····· 26
3) 수정 평가 항목 ····· 29
4) 평가 방법 ····· 31
2.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권고 ····· 32
1) 종합통계표 ····· 32
2) 세부 항목 평가 결과 ····· 34
3)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 ····· 56

Ⅳ.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평가 ····· 58
1. 개요 ····· 58
1)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와 목적 ····· 58
2)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원칙 ····· 58
2. 인권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체크사항 ····· 59
3. 인권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평가 ····· 61
1) 국토분야 인권침해 형태 및 이해관계자 ····· 61
2) 국토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 피해 형태 ····· 63
3) 인권영향평가 방법 ····· 64
4)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 내용과 형태 ····· 65
4. 연구과제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 66
1) 주택·주거권 관련 과제수행 리스트 평가(2010～2019년) ····· 66
2) 2019년 완료된 과제에 대한 인권관점에서의 검토 ····· 70
3) 2020년 수행 예정 과제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 72

[참고문헌] ····· 83
[부록]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84

표 차례

표 Ⅱ-1. OPERA 주요 내용 ····· 11
표 Ⅱ-2. OPERA의 정책 영향 평가(2단계) 요약 ····· 13
표 Ⅱ-3. OPERA의 자원에 대한 평가(3단계) 요약 ····· 14
표 Ⅱ-4. OPERA의 평가(4단계) 요약 ····· 15
표 Ⅱ-5.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착안사항) ····· 16
표 Ⅱ-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실적 ····· 17
표 Ⅱ-7.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내부 지표 ····· 18

표 Ⅲ-1. 국토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체크리스트 비교 ····· 23
표 Ⅲ-2.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25
표 Ⅲ-3. 신규 평가항목 ····· 27
표 Ⅲ-4. 수정 평가 항목 ····· 31
표 Ⅲ-5. 국토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 ····· 32
표 Ⅲ-6.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통계표 ····· 33
표 Ⅲ-7.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37
표 Ⅲ-8.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41
표 Ⅲ-9.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44
표 Ⅲ-10.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 46
표 Ⅲ-11.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47
표 Ⅲ-12.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 49
표 Ⅲ-13.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 51
표 Ⅲ-14.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52
표 Ⅲ-15. 분야 7. 저작권 보호 ····· 53
표 Ⅲ-16. 분야 8 환경권 보장 ····· 54
표 Ⅲ-17.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 55
표 Ⅲ-18. 분야 10 기타인권보호 ····· 56

표 Ⅳ-1.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체크사항 ····· 60
표 Ⅳ-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표 예시 ····· 63
표 Ⅳ-3. 국토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 피해 형태 ····· 63
표 Ⅳ-4. 국토연구 관련 이해관계자의 유형 예시 ····· 64
표 Ⅳ-5. 인권영향 상황 및 대응조치 요약(안) ····· 66
표 Ⅳ-6. 국토연구원의 주택·주거권 분야 과제 수행 리스트(2010~2019년) ····· 67

그림 차례

그림 Ⅱ-1.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영향평가의 5단계 ····· 6
그림 Ⅱ-2.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시점 ····· 19
그림 Ⅳ-1. 인권영향평가에서의 부정적 영향 취급 범위 ····· 62

요약

Ⅰ. 서론

- ○ 인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임.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먼저 시작됨
- ○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는 등 공공부문이 인권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연구기관 평가의 핵심지표로 인권경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또한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요청받고 있음
- ○ 국토연구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평가와 더불어 주요 연구사업이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등에 미칠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인권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맞춤형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여,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적용

□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되, 노동자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인권에 영향을 받는 권리자의 관점에서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 인권영향평가는 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대상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

- ○ 맞춤형 평가(Customization) : 사업 또는 정책시행 주체의 특성과 영향을 받을 대상의 특성에 맞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 주인의식(Ownership) :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관 자체가 평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이끌어가야 함

○ 위험요인과 기회들(Opportunities) : 인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권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함

○ 실질적인 참여(Meaningful Engagement) : 기관의 입장에서 인권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가 평가에 관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꺼려지는 요인일 수 있으나, 잠재적인 피해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를 발굴하고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효율적임

○ 전략적 방향설정(Strategic Alignment) : 인권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관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 발전전략도 감안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인권영향평가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일부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고한 평가방법과 기준이 정립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시행 방안

○ 경영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경영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 기반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함
- 연구진 회의, 국토연구원-연구진 회의 등을 거쳐 기존 체크리스트를 수정함
- 국토연구원 자체 평가 후 평가 근거 등에 대해 연구진의 검토를 거침

○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연구사업 중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택 및 개발 분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수행함

□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국토연구원에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실시하고, '연구사업 인권영향평가'는, 해당 연구진이 주도하여

평가하되, 인권영향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연구를 해당 연구진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인권영향평가 작업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감독을 담당함

○ 노조원, 비노조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국민(취약계층)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함.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절차의 투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대상·방법을 결정하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기관운영평가 체크리스트에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추가

-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비율 설정 및 달성 여부
- 인권(주거권 등)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여부
- 연구 과제 선정 및 평가 항목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 고려 여부
- 성평등 정도 측정을 위한 상위 직급 여성 비율
-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자기결정권이 상급자나 용역발주처에 의해 침해될 때 이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용역발주처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가 있는지 여부
-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의 인권침해 요소 검토 절차 여부
- 세종시로의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및 자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Ⅲ.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결과

○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2018)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국토연구원에 맞추어 수정·작성됨.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기존의 것에서 12개 항목을 수정하고 33개의 신규 평가항목을 선정해 10개 분야, 31개 항목, 143개 지표로 구성하였음

-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금지’, ‘분야 10. 기타인권 보호’는 전체 항목을 신규로 선정함

○ 143개 지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예’ 113개, ‘보완 필요’ 10개, 부적합한 ‘아니요’ 3개, ‘정보 없음’ 12개, ‘해당 없음’ 5개임

○ ‘보완 필요’는 10개 지표에서 나타났음.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개,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개 지표임’

○ ‘아니요’로 응답한 3개 지표는 모두 ‘분야 8. 환경권 보장’임

○ ‘정보 없음’은 ‘분야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개, ‘분야 7 저작권 보호’의 모든 3개 지표임

○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이번의 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

○ 2019년 12월 26일 인권경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최근 인권경영에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음.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를 일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상급기관 및 관리자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부터 직원과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국토연구원 직원의 과잉노동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의 위탁기관 및 관련 협력기관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갑을 관행에서 비롯된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관계 설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Ⅳ.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평가

○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또는 계획에 의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권피해를 최소화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임

-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이 제한되는 수탁과제는 제외함

□ 주택·주거권 관련 과제수행 리스트 평가(2010~2019년)

○ 국토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675개이고, 그 중 주택

및 주거권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69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청년 등 정책 우선순위가 되는 취약계층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25개임

○ 연구 과제 선정 시 평가 항목에 인권 관점을 포함시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큼

-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이외에도 최근 청년, 아동, 이주민, 다문화, 1인 가구 등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과제에서는 소수를 차지함
-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시하는 주거 정책이 가장 보편적인 포용정책임. 이에,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의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제의 확대가 필요함

○ 해외에서는 공공 정책에 대한 결과 기반의 인권영향평가(OPERA)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 주거권의 실현에는 예산 등 자원 배분이 필수적임. 향후 주거권 실현에 있어서 세금 및 예산 정책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9년 완료 과제 : 주거권 실현을 위한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드문 연구임. 특히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수준(level) 정부의 주거권에 있어서의 적극적 의무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제적인 인권관점에서 보면 인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의무 주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포함됨. 우리나라는 주거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거권 실현 노력은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제도화 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 지역별로 사회주택의 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권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 프랑스의 주거대항법(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 DALO법),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바우처,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 홈(HOME)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함

○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큰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법률, 예산, 조직에 의해 구체

화되고 제도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0년 예정 과제 :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 본 연구는 인권 향상이라는 관점에 기반해 연구가 진행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가구의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 대상 설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가구 포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분석 대상 가구임
- 성소수자 가구, 비혼, 비혈연 가구 등 새로운 가족구성권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변화된 가족 가치와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변화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변화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 및 관련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이 필요함
- 주거패턴 및 주거수요 예측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서 인구학, 미래학, 주거정책, 주거복지 등 다학제적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2020년 예정 과제 :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

○ 아동,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등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으나 부처 간 지원정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해,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함. 사각지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은 목적 달성의 정당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제도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부처 간 연계성 강화가 '중복지원 방지'라는 측면이 강조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 수급 프레임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 취약계층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의 가치임. 연구 추진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 등이 고려되어야 함

□ 2020년 예정 과제 :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강화 방안」

○ 본 연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취약계층 당사자의 현실과

욕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미가 있음

- ○ 본 연구는 기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반지하, 옥탑, 고시원 및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념적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 본 연구가 비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불일치 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구조와 주거이력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의 요소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뿐만 아니라 부담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미를 지님
- ○ 연구 추진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심층인터뷰 등을 수행 계획은 연구의 인권적 측면과 정당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2020년 예정 과제 : 「지방도시 주거지 재생을 위한 도시·주택 정비방안」

- ○ 지방도시에서의 사업성 부족, 높은 고령자 주민비율,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개선과 관련 계획체계 개선이 필요함
- ○ 주요 이해관계자는 도심 쇠퇴지역 주민(고령가구, 노후주택 세입자), 도심지역 소상공인, 지방도시 내 신규주택 수요가구, 도시 관리자(지방자치단체)임
-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저가의 상가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단기적 시각에서의 섣부른 규제완화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 근린공원 조성, 각급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확충하여 거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을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가능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020년 예정 과제 :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소유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 ○ 재개발·재건축 기타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그 밖의 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의 주거의 질 향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부담이 과소하여 개발이익 등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당해 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주택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켜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서울 주요 지역과 서울 기타지역, 서울과 대도시, 수도권과 지방 등 사이에 현격한 사업 환경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금 증가로 인한 조세·기금 확충 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증가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 등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 인권 피해의 구제 수단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적 구제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나 새로 신설되는 조세·부담금 등의 제도의 경우 법률 내에 기존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수단을 함께 도입해야 할 경우가 있음

Ⅰ. 서론

1. 배경

○ 인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임. 국가의 의무는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을 포함함(DIHR, 2016)

- 존중(respect)의 의무 : 국가는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삼가야 함
- 보호(protect)의 의무 : 국가는 제3자[1]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이미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실현(fulfill)의 의무 : 국가는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가는 인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 법적, 사법적, 정책적, 재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함. 또한 국가는 스스로 인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의존적이고, 취약하며,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먼저 시작됨

- 국제 인권법적 틀 안에서, 국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지방정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법규, 정책,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켜야 함(Harrison & Stephenson, 2010)
-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영향평가는 법규의 제·개정, 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영국 애버딘 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음.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핵심 요소들은 정책 목표 확인, 잠재적인 영향평가,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검토, 결과 모니터링임

○ 공적 영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함께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UN은 대표적인 사적 영역의 행위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을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함(UN Human Rights Council, 2011)

---

1) 비국가 행위자 혹은 사적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조합, 개인, 종교집단, 그 외 비국가 기관 등이 해당됨.

❍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는 등 공공부문이 인권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제시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연구기관 평가의 핵심지표로 인권경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또한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요청받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를 고려한 평가요소 신설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였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 국토연구원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영향평가는 법규의 제·개정, 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임

❍ 국토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함

- 기관별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인권경영평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 주민 및 지역사회(community)에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가능한 회피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정책) 인권영향평가

❍ 국토연구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평가와 더불어 주요 연구사업이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등에 미칠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인권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의 경영은 연구원과 직원뿐 아니라 협력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경영평가가 필요함
- 국토연구원은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처럼 사업(정책 또는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연구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경영평가가 필요함
- 이에 실행가능성과 인권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정적 인권영향을 중심으로 미리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맞춤형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여,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연구 범위와 내용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 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확정
- 기관 평가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시행
- 교육 및 자문
- 평가보고서 작성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사례분석 :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국토연구원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원
-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지원 및 연구사업 중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이 분야의 인권리스크 분석
- 선정된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시사점 도출
- 인권영향평가 담당자에 대한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4.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인권영향평가 사례에 관한 국내외 문헌 연구
- 체크리스트 작성 및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연구진 회의
- 평가 항목, 범위, 주요 인권 이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진과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담당자간 회의
- 체크리스트 확정과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범위 확정을 위한 연구진과 국토연구원(원장,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등 참여) 회의
- 인권 분야 전문가 자문
- 인권경영평가위원회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적용

1. 국외 사례

○ 해외의 정책 또는 민간사업의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체크항목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절차와 각 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1)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2)]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로 다국적 민간기업들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접근방식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되, 노동자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인권에 영향을 받는 권리자의 관점에서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완화, 구제 수단 등을 결정함

○ 기업, 권리자, 기타 관련 당사자, 특히 인권 행위자 사이의 소통을 이끌어 냄

○ 기업, 이해관계자, 권리자와 기타 인권영향평가 관련자들 각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을 도모함

○ 파악된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문서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

○ 누적된 인권영향과 법률적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함

□ 인권영향평가 착수시점 및 지속기간

○ 인권영향평가는 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착수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대상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함

□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 참여 : 피해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함

---

2)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6,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 비차별성 : 참여와 협의 과정이 포괄적이어야 하는 바,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 권한부여 :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함

○ 투명성 : 절차는 투명해야하며, 결과도 공개되어 공유되어야 함

○ 책임 : 영향을 주는 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평가 내용

○ 국제 인권 기준 및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실제적·잠재적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인권침해의 범위, 규모, 규제가능성 측면에서 심각성을 평가해야 함

○ 부정적 인권영향을 완화하고,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영향완화조치 : 회피→경감→복구→구제의 완화체계를 따름
- 피해자가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 인권영향평가의 단계

① 1단계 : 평가계획 수립 등 준비

○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찰함

- 기업 프로젝트 및 활동, 인권 환경 및 맥락, 이해관계자 등을 파악하고 관찰함

○ 인권영향평가 팀을 구성함

② 2단계 : 자료 수집과 기준 설정

○ 주요 인권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함

○ 인권기준 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인권 문제의 초기 식별에 기초하여, 후속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한 권리자와 의무주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데이터를 수집함

③ 3단계 : 영향 분석

○ 기업 관련 영향을 파악하고 심각성을 평가함. 평가를 위해 유사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한 결과 등을 검토함

○ 영향 분석은 영향의 범위, 규모,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영향 심각성 평가를

포함해야 함

○ UN 지침에 따라 기업은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실제적·잠재적 인권영향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영·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영향도 고려해야 함

○ 당장의 영향뿐 아니라 누적되는 영향도 파악해야 함

○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되 긍정적 영향도 파악해야 함

④ 4단계 : 영향 완화 및 관리

○ 인권영향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을 배치함

○ 인권영향 해결 조치를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함

○ 모니터링 함

⑤ 5단계 : 보고 및 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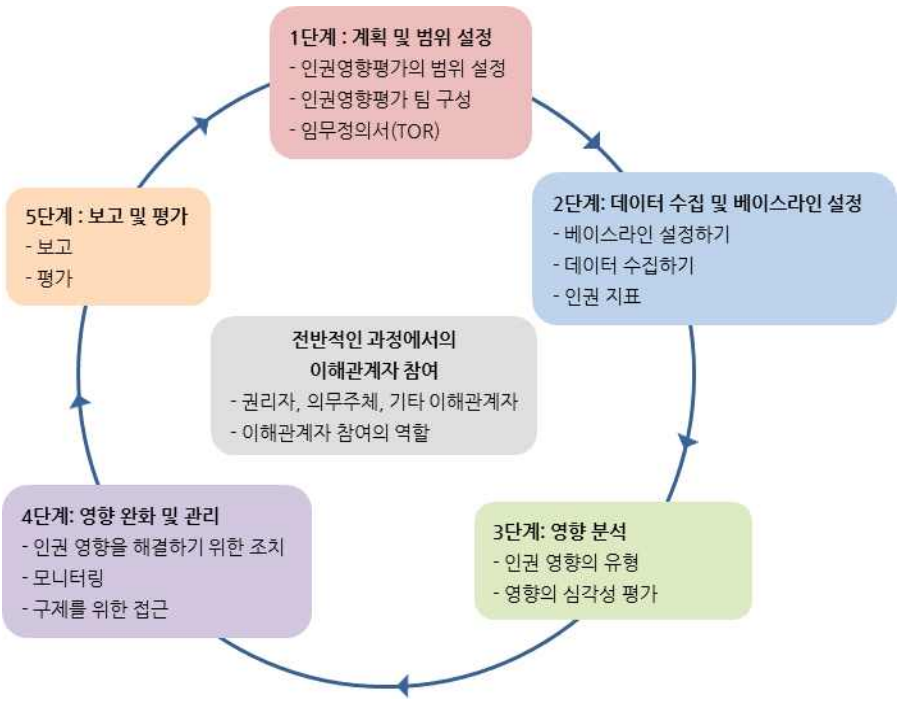

그림 Ⅱ-1.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영향평가의 5단계

2) 영국 애버딘 시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가이드 : 단계별 절차를 중심으로[3)]

① 1단계 : 필수적인 정보의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즉, 기능·정책·처분의 명칭, 양식을 작성하는 담당자, 평등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일자 등을 작성함
- 정책 등의 수행에 있어 시 외의 참여기관(다른 시 관련 기관, 파트너 기관 등)이 있는지, 또 참여기관이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파악함

② 2단계 : 정책 등의 목표 파악

- 기능·정책·처분의 주요 목표를 파악함
- 정책 등으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함
- 정책 등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positive action) 또는 불이익을 없애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함
- 정책 등은 지역 공동체의 우호적인 관계 및 화합을 증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함

③ 3단계 :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잠재적인 정책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들을 확인하기 위해 센서스자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기록, 실제 관찰 자료(observational information), 연구보고서, 민원 자료, 외부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함

④ 4단계 : 예상되는 인권영향의 평가

- 정책 등을 통해 목표 집단 등은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평가함

⑤ 5단계 : 규정에 부합하는지 체크

- 정책 등이 잠재적으로 영국 「인권법(1998)」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함
-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관련 국내법 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3) Aberdeen City Council, 2008, Equality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the Guide.

지를 파악함

- 1단계와 2단계에서 확인된 정책의 목적이, 평등 관련 법률 또는 인권법 등에 비추어 정당한 목적인지 파악함
- 정책의 영향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 여부를 파악함

⑥ 6단계 : 모니터링과 재검토

- 정책 등이 실행되는 과정의 모니터링 방법을 결정함
-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함
- 재검토 일정과 계획을 사전에 확정함

⑦ 7단계 : 대중 보고

-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의 결과 등을 대중들에게 보고함

⑧ 8단계 : 마감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4)]

□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① 맞춤형 평가(Customization)

- 사업 또는 정책시행 주체의 특성과 영향을 받을 대상의 특성에 맞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② 결합(Integration)

- 기업 또는 기관의 조직에 인권영향평가(과정)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함

③ 주인의식(Ownership)

-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관 자체가 평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기관 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이끌어가야 함

---

4)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2013, *Conducting an Effect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teps, and Examples.*

④ 집중(Focus)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인권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슈들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⑤ 위험요인과 기회들(Opportunities)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인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권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함

⑥ 실질적인 참여(Meaningful Engagement)

○ 인권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가 평가에 관여하는 것을 인권영향을 초래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꺼려지는 요인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를 발굴하고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효율적임

⑦ 투명성(Transparency)

○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

⑧ 전략적 방향설정(Strategic Alignment)

○ 인권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관(회사)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전략도 감안하여 인권영향평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 절차

① 1단계 : 심도 있는 여건파악(Immersion)

○ 첫 단계는 기관의 운용내용과 인권관련 상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임

- 이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기관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관들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② 2단계 : 로드맵(Mapping)

○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이슈들을 파악함

③ 3단계 : 잠재적 인권피해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④ 4단계 : 관리(Management)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영향과 위험요인 뿐 아니라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도 발굴하여 필요한 대처방안을 제시함

4) 공공 정책에 대한 결과 기반의 인권영향평가(OPERA)[5]

❍ 2009년에 경제·사회적 권리 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이하 CESR)와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Estudios Fiscales (이하 ICEFI)는 "권리인가 특권인가? : 건강, 교육 및 음식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과테말라의 재정 계획(fiscal commitment)"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 본 프로젝트는 국제 인권 단체와 재정 정책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아메리카 시민사회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음. 프로젝트는 특히 인권 의무에 중점을 두고 과테말라의 발전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했음. 또한 과테말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세금 및 예산 정책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음

❍ 이하는 위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방법론적 접근에 관한 것임

- CESR의 분석 체계인 OPERA[6]가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줌

□ 도입

❍ 경제·사회적 권리의 참담한 상태가 한정된 국가 자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그 자원이 배분되는 방법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시사되었음. 인권 의무 준수를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경제·사회적 권리는 시민권이나 정치적 권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에 세 가지 유형의 의무를 부과함

- 1. 존중(respect), 즉 권리의 향유 방해를 삼가야 함
- 2. 보호(protect), 즉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함
- 3. 실현(fulfill), 즉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함

❍ 공공 정책에 의해 경제·사회적 권리 박탈이 발생하고, 영속화되며,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 정책을 인권에 기반해서 평가할 때에는 특히 책임성(account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실현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집

---

5)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2012, *Assessing Fiscal Polic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6) 결과(Outcome), 정책적 노력(Policy Efforts), 자원(Resource)에 기반 해서 수집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증거가 평가(Assessment)시 사용되기 때문에 OPERA라고 불림.

중해야 함

- 특히 국가의 점진적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최대 가용 자원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함

○ 실현의 의무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1. 조치를 취할 의무 :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해 입법, 사법, 예산, 행정 및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해야함(출처 :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 2. 최대 가용 자원 : 국제 협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한 최대 가용 자원이 필수적임(출처 : 규약, 선택 의정서, 일반 논평)
- 3. 최소 핵심 의무 : 최소 필수 수준의 권리 향유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출처 : 일반 논평 3)
- 4. 차별 금지 : 권리 향유 및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야 함(출처 : 규약, 일반 논평)
- 5. 권리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고(available), 접근 가능하고(accessible), 수용 가능하며(acceptable), 관련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adequate quality)이 유지되어야 함(AAAAQ : available, accessible, acceptable and of adequate quality)(출처 : 일반 논평)
- 6. 점진적 실현 : 권리 향유 수준 증진을 위해 고의로 후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함(출처 : 규약 2항)
- 7. 참여, 투명성 및 책임 : 정책 결정/모니터링 과정에 필수적임(출처 : 일반 논평)

표 Ⅱ-1. OPERA 주요 내용

결과	권리 향유의 종합적인 수준 판단	권리 향유 내의 불균형 판단	시간 경과에 따른 진전 판단
	최소 핵심 의무	차별 금지	점진적 실현
정책적 노력	법적, 정책적 계획 확인	정책 내용 및 실행 여부 확인	정책 과정 분석
	조치를 취할 것	AAAAQ 기준	PANTHER 원칙,[7] 구제받을 권리
자원	자원 할당 평가	자원 생성 평가	정책 과정 분석
	최대 자원	자원의 가용성	PANTHER 원칙
평가	이외의 결정 요인 설정	국가적 제약에 대한 이해	국가의 준수 여부 확인
	불가분, 상호의존성	협력할 의무에 대한 보호 및 존중	이행 의무

7) PANTHER 원칙은 참여(participation), 책임(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투명성(transparency), 인간존엄(human dignity), 권한부여(empowerment), 법률기반(rule of law)의 약칭임

□ 1단계 :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ing Outcomes)

○ 본 연구는 인권 향유에 대한 설명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성장 지표(development indicators)를 기반으로 과테말라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검토했음

- 지표만으로 국가의 인권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표를 통해 권리 향유를 위한 최소 필수 수준 범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1단계(권리 실현 수준 측정 단계) 요약

- 최소 핵심 의무(Core obligation)[8] : 최소 필수 수준을 포함한 권리 실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함
- 차별 금지 : 사회 집단 간 권리 향유의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함
- 점진적 실현 : 시간에 따른 불평등 수준의 변화, 진전, 악화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설정해야함

□ 2단계 : 정책 영향 평가(Assessing Policy Efforts)

○ 경제·사회적 결과만을 기반으로 권리 향유 수준을 책정하고, 국가의 경제·사회적 권리 이행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참담한 경제적 결과가 그 자체로 의무 비준수(non-compliance)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국가는 결과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함

○ 즉, 국가는 "특정 권리 향유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따라서 권리 이행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국가가 제시하는 계획이나 노력 또한 검토되어야 함

○ 국가의 계획과 노력은 권리의 보편적 향유, 점진적 실현 및 평등을 위한 공공 정책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들은 규약에 열거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정확한 목표를 지닌 채로" 조치를 취해야 함

---

8) "최소 핵심 의무"의 개념은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3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림버그(Limburg) 원칙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었음. 위원회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 권리의 최소 필수 수준 충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국가가 이 최소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예를 들어 상당수의 국민이 주요 식량, 필수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보금자리 및 주거, 기본적인 교육 등을 박탈당한 경우), 이는 규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presumption)되는 것으로 이어짐.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최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의무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음. 1993년부터 위원회는 규약에 열거된 식량, 건강, 주거, 교육 및 물에 대한 권리들의 최소 핵심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수의 일반 논평들을 채택했음.

표 Ⅱ-2. OPERA의 정책 영향 평가(2단계) 요약

요소	인권 원칙	평가 방법의 유형
법적·정책적 계획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	국제적 계획(commitments)과 이를 시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헌법 및 입법 조항을 설정해야 함. 권리와 관련된 특정 법률 및 정책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조항들을 국제 표준과 비교해야 함
정책 내용 및 구현 검토	AAAAQ 기준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검토해야 함.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정량 및 정성적인 데이터를 평가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또한 측정해야 함
정책 과정 분석	참여, 투명성, 책임, 구제받을 권리	관련 국가 법률 및 정책 (예 : 정보 접근, 지역 참여, 구제 절차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을 분석해야 함. 이 법률이나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해야 함. 이는 인터뷰나 기타 질적, 양적인 접근법을 통해 수집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했음. 평가의 목적은 이 정책이 권리 향유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및 품질의 개선 정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음

○ 권리에 기반한 관점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의 설계 및 구현 방식을 함께 다룸. 따라서 정책이 생성되고 이행되는 과정 또한 고려 대상임

○ 인권 원칙(human rights principles)은 정책의 수립, 협의 및 이행에 대한 절차적 요구사항(procedural requirements)을 명시하고 있음. 절차는 투명하고, 모두의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며 모니터링, 감독 및 책임에 대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함

○ 이 단계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음

- 권리향유를 위해 어떤 법적, 정책적 계획이 세워졌는가?
- 책무 이행을 위해 실행된 계획이 원칙적,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이용 가능성을 개선했는가?
- 본 계획이 불평등 완화와 권리의 최소 수준의 보편적 충족을 우선시하는가?
- 정책 절차가 참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가? 또한 이 절차가 효율적인 보상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가?

□ 3단계 : 자원에 대한 평가(Assessing Resources)

○ 최대 가용 자원을 확인하고 특정 권리와 관련된 공공 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 집단과 차별받는 집단을 확인함. 이러한 지출 경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함. 혹은 이를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와 비교함

표 Ⅱ-3. OPERA의 자원에 대한 평가(3단계) 요약

요소	인권 원칙	평가 방법의 유형
자원 계획 및 실제 지출 평가	핵심 의무 차별 금지 최대 가용 자원에 따른 점진적 실현, 투명성, 책임	특정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지출에 할당된 국가 예산과 관련 기준(benchmark)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산해야 함. 본 지출로부터 혜택을 받는 인구 집단을 확인해야 함. 지출 불균형과 인권 향유의 불균형을 비교해야 함.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지출 경향을 비교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야 함 공공 지출을 추적해야 함
자원의 동원에 대한 평가	최대 가용 자원에 따른 점진적 실현 차별 금지	국가 예산을 전체 경제의 백분율로 계산하고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야 함 세금, 차용, 국제 원조로 대표되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적절성과 형평성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함 수익 증대를 위한 국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평가해야 함(예 : GDP의 %로 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이 기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확인)
관련 정책 과정 분석	참여, 책임, 투명성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피드백을 수집해야 함(예 : 인터뷰 또는 기타 질적 방법 및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경제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련된 지표를 분석해야 함

○ 자원의 투입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중의 참여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함

□ 4단계 : 평가(Assessment)

○ 이 최종 단계의 목적은 이전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인권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국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

○ 인권과 근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의존적임. 이를 반영하여 특정 권리 향유를 방해하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권리 박탈' 또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을 찾음

○ 권리 박탈이나 여러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 과테말라 내의 권리 향유 방해 주요 요인은 '빈곤'이었음

○ 최종 평가를 발표하기 전, 다른 국가 및 국제적 제약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권리 이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또한 고려되었음. 제약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공무원의 부패, 부당 경영(business misconduct), 엘리트 집단에 의한 자원 배분의 왜곡(elite capture), 기부자가 미치는 영향(donor influence), 조건부 원조 등과 같은 제3자의 행위
- 분권화, 선거 과정, 의회 절차 등과 관련된 구조적 기능 장애

표 Ⅱ-4. OPERA의 평가(4단계) 요약

요소	인권 원칙	평가 방법의 유형
권리 향유를 제한하는 상황적 요인 식별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받을 권리	사람들이 권리를 향유하거나 권리 박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경제, 정치 또는 문화적 요인을 검토해야 함
국가적 제약에 대한 이해	제3자의 오용으로부터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경제·사회적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한 법역 외의 의무	제3자의 행위 및 누락(the acts or omissions of third parties) 또는 구조적 기능 장애가 국가의 권리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함
국가의 규정 준수 여부 평가	이행 의무	위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전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본 연구를 통해 권리 향유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왜 자원이 부족한가? 왜 개혁이 지체되었는가? 이는 진정 국가적 한계의 결과인가?
- 제3자의 간섭은 무엇인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2. 국내 사례

○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일부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고한 평가 방법과 기준이 정립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북구, 광명시 등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이루어짐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는 등 공공부문이 인권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공기업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수정없이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광역지방자치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연구보고서[9]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4개 단체는 조

9) 국가인권위원회(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도입 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12. 12. 14-51쪽

례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 사항)하고 있음

○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권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영향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기준(평가 중점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10)]

표 Ⅱ-5.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착안사항)

구분	세부 내용	
	평가 대상	세부 평가기준
정책 입안	• 조례 등 제도 도입 및 폐지	• 인권침해(차별,권리제약 등) 요소 여부 • 정보공개 및 홍보 여부 • 시민참여 여부
	• 정책기획(도입) 및 폐지	
일반 행정	• 인사(채용, 승진) 계획	• 차별적 인사 여부 • 여성, 장애인 포함여부 •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 위원회 등 신규 조직 구성	• 일반시민 참여 여부 • 여성 참여 여부
도시 개발	• 택지 및 단지(산업, 관광 등)개발, 재개발	• 사유재산 침해 여부 • 개발에 대한 주민 찬반 • 주거권 침해 여부 • 환경권(소음,대기,악취,수질,조망권 등) • 이동권 침해 여부
건축	• 공공시설물(문화시설 포함) 건축	• 환경권 침해 여부 • 노인·여성·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 이용자 접근성 • Barrier Free인증 여부
	• 민간 건축물 허가 및 승인	• 이동권 침해 여부
교통	• 도로 건설	• 보행로 확보 및 안정성 여부 • 교통 안전시설(신호등, 안내판) 설치 여부
	• 대중교통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 교통수단간 환승 허용여부
경제	• 기업체 유치 및 관련시설 확충	• 정규직 고용창출 여부
	• 유통산업 유치	• 소상공인 피해 여부 • 정규직 고용 창출 여부
환경	• 환경시설(기피시설)	• 정보공개 및 시민 찬반 여부 • 주거권(환경오염 등)보호 여부
	• 공원 조성 등 선호시설	• 이용자 평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시설 설치 여부
문화·복지	• 복지사업 및 문화지원	• 차별 발생 여부 •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홍보 여부 • 참여 장애물 발생 여부
계약 발주	• 위탁사업 • 사업 발주	• 업체의 비정규직 비율 • 임금체불 가능성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및 인권 존중 여부

10) 전게서, 47쪽

2)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100%인 곳도 있으나, 극히 일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만 조례를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도 있음

- 광역시 : 서울시에서는 25개 기초지자체 중 14개의 기초지자체가 인권조례를 마련하였고, 부산광역시는 16개 중 10개, 대구광역시는 8개 중 3개,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1개, 광주광역시는 5개 중 5개, 대전광역시는 5개 중 4개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5개 중 5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 도지역 : 경기도 10/31, 강원도 2/18, 충청북도 1/11, 충청남도 14/15, 전라북도 3/14. 전라남도 7/22, 경상북도 3/23, 경상남도 6/18로 조사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2018)'을 마련하였고 이어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보고서(2019)'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실제로 자치법규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수원시는 2017년 3월 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정책,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시행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실적

번호	구분	평가 내용	평가 시행년도
1	공공건축물	'수원 화성행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2	공공건축물	'수원시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3	공공건축물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4	정책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5	자치법규	'2015년 수원시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6	자치법규	'2016년 수원시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7	공공건축물	'수원시 벤처밸리 Ⅱ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7
8	자치법규	'2017년 수원시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8
9	정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8
10	공공건축물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생태환경체험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1	자치법규	'2018년 수원시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2	공공건축물	'자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3	정책	'2018년 수원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4	정책	'에코 수원 스팟영상 제작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5	정책	'인문학글판 창작 詩 공모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2019
16	공공건축물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2019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내부 평가 항목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 아직까지는 평가내용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장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

표 Ⅱ-7.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내부 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인권침해	시민 인권침해	• 자치법규가 국내·외 인권규범과 충돌우려가 있는지 여부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등
		•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
		• 자치법규에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여부
		•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활용 ☞ 허위 → 거짓, 연령 → 나이, ~한 자 → ~한 사람(자연인만 해당)
	사회적약자 인권침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장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요소
		• 특정사람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여부 ☞ 정상인 → 비장애인, 결손가족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침해 구제	사전적 예방수단	•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급 ☞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등 급,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사후적 구제수단	• 제·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 이의신청 절차 마련
참여권	정보공개	•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여부
	사회적약자 참여권	•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특정사람이나 특정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인권증진	인권증진 기대효과	• 제·개정이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제·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 또한 수원시에서 시행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보고서에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시점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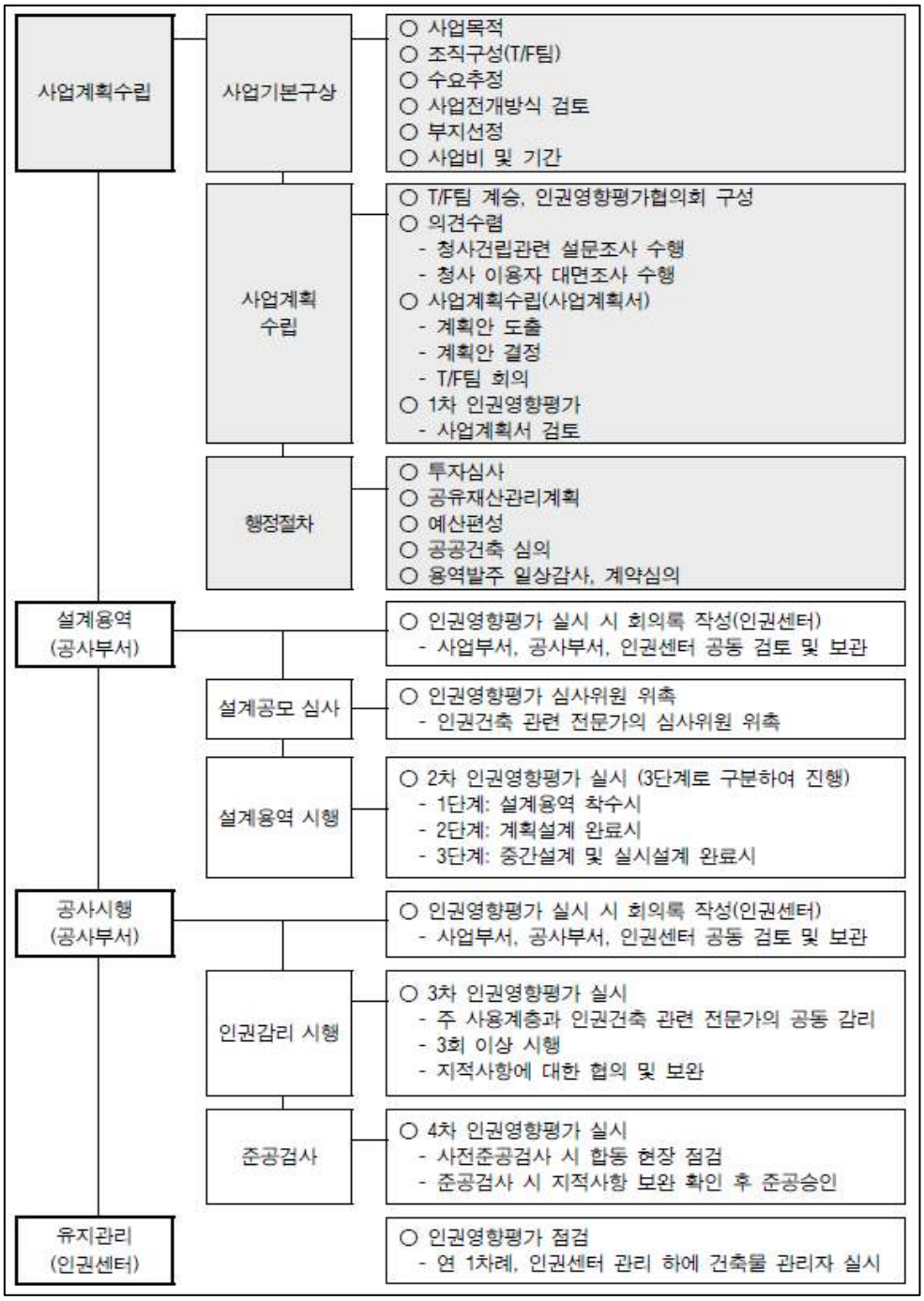

그림 Ⅱ-2.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시점

3.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국내외 사례에 기반한 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 인권영향평가는 법규의 제·개정, 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과정에서 그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짐

○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달리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임(국가인권위원회, 2018)

○ 기관의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구 과제를 선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수행할 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영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경영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 기반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함
- 연구진 회의, 국토연구원-연구진 회의 등을 거쳐 기존 체크리스트를 수정함
- 국토연구원 자체 평가 후 평가 근거 등에 대해 연구진의 검토를 거침
-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이번의 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연구사업 중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택 및 개발 분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수행함

2) 향후 개선 방안

□ 평가 주체 측면에서의 개선

○ 향후 인권영향평가 시행체계 구축과 '인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국토연구원에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

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내 분야별 전문가와 외부 인권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

○ 본 위원회는 연구원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연구사업 인권영향평가'는, 해당 연구진이 주도하여 평가하되, 인권영향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연구를 해당 연구진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인권영향평가 작업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감독을 담당함

□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

○ 노조원, 비노조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국민(취약계층)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함

○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 결정,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기관운영평가 체크리스트에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추가를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예시와 같음

○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비율 설정 및 달성 여부

○ 인권(주거권 등)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여부

○ 연구 과제 선정 항목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 고려 여부

○ 연구 과제 평가 항목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 고려 여부

-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계획 수립 시 포함하는지 여부(특히 저소득층, 여성, 이주민,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성평등 정도 측정을 위한 상위 직급 여성 비율

○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자기결정권이 상급자나 용역발주처에 의해 침해될 때 이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용역발주처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가 있는지 여부(계약 범위 밖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무리한 요구, 무리한 일정 요구 등)

○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의 인권침해 요소 검토 절차 여부

○ 세종시로의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및 자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 제공 여부
-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는가?
- 주말과 야근 업무에 따른 대체 휴무 제도가 있는가?

Ⅲ.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결과

1.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는 '인권경영'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2014)는 인권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변화와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2018)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국토연구원에 맞추어 작성됨(표 Ⅲ-1)

- 국가인권위원회의 체크리스트는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6개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3개 분야는 내용을 수정하였고, 1개 분야는 삭제 후 대체함. '강제노동의 금지'를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를 '저작권보호'로 '소비자인권 보호'를 '소비자(국민)인권 보호'로 수정하였고, '아동노동의 금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고, '기타인권 보호'로 대체하였음

표 Ⅲ-1. 국토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체크리스트 비교

구분	국토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5	산업안전 보장	산업안전 보장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저작권 보호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8	환경권 보장	환경권 보장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소비자인권 보호
10	기타인권 보호	아동노동의 금지

1) 분야·항목·지표의 구성

❍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10개 분야, 31개 항목, 143개 지표로 구성하였음(표 Ⅲ-2)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인권존중 정책선언(6개 지표)',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6개 지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5개 지표)', '인권경영 성과(7개 지표)', '구제철차 마련(6개 지표)'의 5개 항목, 30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은 '고용상 비차별(5개 지표)', '고용상 남녀 비차별(7개 지표)',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3개 지표)', '외국인근로자 비차별(3개 지표)'의 4개 항목, 18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은 '결사·단체교섭의 자유(4개 지표)',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5개 지표)',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5개 지표)'의 3개 항목 14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는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8개 지표)'로 구성함. 분야 4-1.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7개 지표)'로 구성하고, 분야 4-2.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10개 지표)'로 구성하여, 총 3개 항목, 25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은 '연구원 내 안전(4개 지표)',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4개 지표)', '필수장비 및 교육(1개 지표)', '피해 근로자 지원(3개 지표)'의 4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4개 지표)', '모니터링 실시(2개 지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4개 지표)'의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7. 저작권 보호'는 '타인의 저작권 보호' 1개 항목, 3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8. 환경권 보장'은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6개 지표)', '환경정보의 공개(2개 지표)', '비상계획 수립(3개 지표)'의 3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는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5개 지표)', '국민 사생활 보호(6개 지표)'의 2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함
- '분야 10. 기타인권보호'는 '정보인권 보호(3개 지표)', '일·가정양립(3개 지표)', '모성 보호(3개 지표)'의 3개 항목, 9개 지표로 구성함

표 Ⅲ-2.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야			항목	지표 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6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인권경영 성과	7
			구제절차 마련	6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5
			고용상 남녀 비차별	7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5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8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10
5	산업안전 보장		연구원 내 안전	4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필수장비 및 교육	1
			피해 근로자 지원	3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모니터링 실시	2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7	저작권 보호		타인의 저작권 보호	3
8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6
			환경정보의 공개	2
			비상계획 수립	3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5
			국민 사생활 보호	6
10	기타인권 보호		정보인권 보호	3
			일·가정양립	3
			모성 보호	3
10개 분야			31개 항목	143개 지표

2) 신규 평가항목

○ 33개의 신규 평가항목을 선정함(표 Ⅲ-3)

-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금지', '분야 10. 기타인권 보호'는 전체 항목을 신규로 선정함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중 '고용상 남녀비차별' 항목의 지표12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등 각 지자체의 고용 차별금지 조례를 참조하여 선정함

- 평가지표에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를 신규로 선정함

○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의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항목의 지표7과 지표8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연구기관의 중요 인권 이슈일 것이라 판단되는 과도한 노동 관련 신규로 선정함

- 지표7에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게 한다.'를 신규로 선정함
- 지표8에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를 신규로 선정함

○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금지'는 연구원의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신규로 포함시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작성한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이하임.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지 여부, 상담 조직 운영의 적절성, 사건 발생 시 조사, 피해자 조치, 행위자 징계, 사건 관련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됨
-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금지'의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하인데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력도 직장 내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이용해 작성함.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희롱 금지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상담조직 운영, 사건 발생 시 조사, 피해자 조치, 사건 관련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됨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중 '피해근로자지원' 항목의 지표12의 작성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임

○ '분야 8. 환경권 보장' 중 '비상계획 수립' 항목의 지표10에 응급 상황 대처 교육 관련 내용을 신규로 선정함

○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중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항목의 지표4에 국민들의 연구결과물 접근성 관련 내용을 신규로 선정함

- 지표4에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연구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를 신규로 선정함

○ ‘분야 10. 기타인권 보호’ 중 ‘정보인권 보호’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에 관한 항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함

- ‘정보인권 보호’ 항목의 주요 내용은 직원에 대한 경영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의 충분성, 연구사업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이 포함됨
- ‘일·가정 양립’ 항목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화조성 및 정책 수립, 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의 적정성, 가족돌봄휴직 실시에 대한 노력 등이 포함됨
- ‘모성 보호’ 항목 관련해서는 편의시설 제공, 사업 진행시 의견 반영,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법률 보장 등이 포함됨

표 Ⅲ-3. 신규 평가항목

항목				지표
분야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남녀비차별	12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분야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7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게 한다.
			8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1	연구원이나 다른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한다.
			2	연구원은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실시된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 등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5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6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행위자의 징계 전에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7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취하지 않는다.

항목				지표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1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언어, 문자, 행동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연구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다.
			3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사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등("피해노동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6	조사 기간 동안 피해노동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 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8	연구원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등에게 인사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9	연구원은 협력기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노동자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하여 해당 노동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연구원은 노동자가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분야5	산업안전 보장	피해근로자지원	12	연구원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분야8	환경권 보장	비상계획 수립	10	연구원은 비상시 소화기·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및 119신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법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분야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4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연구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분야10	기타인권 보호	정보인권 보호	1	연구원은 직원에게 경영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다.
			2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일·가정 양립	4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연구원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항목				지표
				실시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그 밖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
			6	연구원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적정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성 보호	7	연구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8	연구원은 모성 보호 지원사업 수행시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9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장한다.

3) 수정 평가 항목

○ 총 5개 분야의 12개 항목을 수정함(표 Ⅲ-4)

- 기존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지표의 취지를 살리되 연구원의 평가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 수정 시 지표의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함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항목의 지표13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수정함

- 기존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를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업무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로 수정함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중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항목의 지표5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수정함

- 기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 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로 수정함

○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중 '모니터링 실시' 항목의 지표6은 협력기관의 인권침해 대응 관련 내용을 수정함

- 기존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를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여부 인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로 수정함

○ ‘분야 8. 환경권 보장’의 다음 3개 지표를 수정함

- ‘회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를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로 수정함
- ‘회사는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한다.’를 ‘연구원은 내부운영에서 뿐 아니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국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로 수정함
- ‘회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를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직원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로 수정함

○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의 다음 6개 지표를 수정함

- 기존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를 ‘연구원은 부적절한 연구결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로 수정함
- 기존 ‘회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를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로 수정함
- 기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를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체 저작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은 일반에게 공개한다.’로 수정함
- 기존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를 ‘연구원의 잘못된 연구결과에 의하여 관련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결과의 수정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수정함
- 기존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를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등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로 수정함
- 기존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를 ‘연구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로 수정함

표 Ⅲ-4. 수정 평가 항목

항목				지표
분야2	고용상의 비차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13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업무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분야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분야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 실시	6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여부 인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분야8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2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4	연구원은 내부운영에서 뿐 아니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국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환경정보의 공개	6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직원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분야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1	연구원은 부적절한 연구결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3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체 저작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5	연구원의 잘못된 연구결과에 의하여 관련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결과의 수정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국민사생활 보호	6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등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연구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4) 평가 방법

○ 답변결과의 구성은 국가인권위(2018)의 매뉴얼을 준용하여, 각 지표에 관해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의 5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함(표 Ⅲ-5)

- 지표의 질문에 합치하면 '예'로,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요'에 표시함
- 현재의 상태로는 '예'라고 표시하기에 미흡하지만, 보완을 거치면 향후 '예'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필요'에 표시함
- 질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보 없음'에 표시하고, 그 질문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함

표 Ⅲ-5. 국토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성과	1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인권경영 성과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소계							
인권경영 보고	5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보고는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소계							
합계								

2.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권고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확인한 결과임

1) 종합통계표

○ 143개 지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예' 113개, '보완 필요' 10개, 부적합한 '아니요' 3개, '정보 없음' 12개, '해당 없음' 5개임(표 Ⅲ-6)

○ '보완 필요'는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개,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개 지표임

- 분야 1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항목의 지표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와 지표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인권영향평가 정기적실시' 항목의 지표7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와 지표10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임

표 Ⅲ-6.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통계표

구분	항목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7	4	-	9	-	
2	고용상의 비차별	18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	-	-	-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8	-	-	-	-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7	-	-	-	-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10	-	-	-	-	
5	산업안전 보장	12	-	-	-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6	-	-	2	
7	저작권 보호	-	-	-	3	-	
8	환경권 보장	5	-	3	-	3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11	-	-	-	-	
10	기타인권 보호	9	-	-	-	-	
합계		113	10	3	12	5	

- 분야 6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항목의 4개 지표 모두가 해당되는데, ‘연구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연구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연구원은 협력기관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사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연구원은 협력기관과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임. ‘모니터링 실시’ 항목의 2개 지표 모두 해당 되며,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관들의 인권 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와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여부 인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임

○ ‘아니요’의 3개 응답은 모두 ‘분야 8. 환경권 보장’임

- ‘환경권 보장’ 중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항목의 지표2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지표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지표5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임

○ ‘정보 없음’은 ‘분야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개, ‘분야 7 저작권 보호’의 모든 3개 지표임

- ‘분야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중 ‘인권경영 성과’ 항목의 지표22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표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지표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임. ‘구제절차 마련’ 항목의 6개 지표가 모두 해당되며,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임
- ‘분야 7 저작권 보호’의 모든 지표에서 ‘정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구체 내용은 ‘연구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연구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임

○ ‘해당 없음’은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개, ‘분야 8 환경권 보장’ 3개 지표임

-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중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항목의 지표9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 보호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와 지표10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임
- ‘분야 8 환경권 보장’ 중 ‘환경정보의 공개’ 항목의 지표6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직원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지표7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와 ‘비상계획 수립’의 지표8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이 해당됨

2) 세부 항목 평가 결과

(1) 분야 1. 인권경영체계 구축

○ 1-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국토연구원은 2019년 4월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강당에서 노사공동으로 인권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과 갑질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함(표 Ⅲ-7)

○ 1-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되었다.

- 연구원의 최고책임자인 국토연구원장에 의해 인권경영 원칙이 표명됨

○ 1-3.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원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인권관련기관의 정책선언 사례를 참고하여 인권헌장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기획경영본부장, 행정실장 및 부서 책임자와 원장의 검토와 타기관 인권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함

○ 1-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국토정책연구 등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 방지를 포함함

○ 1-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모든 직원들이 인권헌장 선포식에 참여하고 인권선언을 제창하였으나 인권헌장을 이해관계자(협력기관)에게 배포하지는 않음. 향후 보완이 필요함

○ 1-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인권정책선언은 인권관련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나 2019년에 최초 시행되어 재검토된 적은 없음

○ 1-7.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매년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나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최초 실시 중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음

○ 1-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 뿐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의 인권규범을 준수할 예정임. 연구원내에서 국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협력센터(GDPC)도 연차별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의 하나로 포함될 예정임

○ 1-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하는 등 초안 작성단계에서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최종심의 단계인 인권경영위원회에도 다수의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1-10.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연구원의 주요 활동은 정책연구 활동인바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대상은 주택정책, 도시정책, 교통정책 등 각종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것으로 판단됨. 공간정책연구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을 대상이

라고 규정할 수는 없음

○ 1-11. 협력기관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외주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도 연구원의 각종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이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거절 및 일정기간 위탁계약 금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협력기관 활동도 평가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1-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경영이행규정에서 인권영향평가는 매년 실시토록 규정함

○ 1-13.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2019년 4월 인권문제가 있는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추진함

○ 1-14.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연구원 인권경영전담부서로 감사실을 지정함

○ 1-15.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시행 중임

○ 1-16.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 요소 발생 시 인권경영전담부서에서 조치를 시행함
- 2019년 12월 26일 인권경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최근 인권경영에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음

○ 1-17.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 협력기관의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거절 및 일정기간 위탁계약 금지 등으로 대응함

○ 1-18. 연구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매년 시행 예정인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량 및 정성지표 확인 및 연차별 인권경영 성과를 측정함

○ 1-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위원을 통해 인권경영성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수렴 함

○ 1-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평가를 통해 연구원 인권경영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함

○ 1-21. 인권경영 성과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 1-22.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통해 연구원의 인권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초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기에는 미흡할 것이라 예상됨

○ 1-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도되어 시간추이 변화 파악을 위한 정보가 부족함

○ 1-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보고내용은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거칠 예정임

○ 1-25.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경영이행규정에서 인권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된 적이 없어 현 단계에서는 구제 이행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1-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구제절차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인권 규범에 기반하고 있음

○ 1-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구제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어 당사자 입장에서 구제절차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1-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구제가 시작되지 않아 구제절차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1-29.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구제가 시작되지 않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없음

○ 1-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구제가 시작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부족함

11) 협력기관이라 함은 국토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인쇄소 등을 말함

표 Ⅲ-7.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되었다.	√					
	3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원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소계		4	2	–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7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10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11	협력기관[11]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계		4	2	–	–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3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14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15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16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7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					
	소계		5	–	–	–	–	
인권경영 성과	18	연구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21	인권경영 성과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22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소계		4	–	–	3	–	
구제절차 마련	25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29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계		–	–	–	6	–	
합계			17	4	–	9	–	

(2)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2-1.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채용 시 노동관련 법률, 채용규칙을 준수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차별하지 않음(표 Ⅲ-8)

❍ 2-2. 연구원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노동관련 법률, 채용규칙을 준수하여 직무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

❍ 2-3.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이외 휴가, 복지포인트, 체육단련장, 휴게실 사용 등 연구원내 각종 복지시설 및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두지 않음

❍ 2-4.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교육·배치, 승진에서 비차별 함

❍ 2-5.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정년, 퇴직, 해고에서 차별을 두지 않음

❍ 2-6.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공고에서부터 용모, 키,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2-7.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동일사업장내 동일 노동에 대하여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2-8.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출산, 모성 보호, 생리 등의 휴가복리제도에서 여성친화적 직장을 추구하며, 각종 복리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2-9.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여성이라고 남성에 비해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음

○ 2-10.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여성이라고 남성에 비해 정년퇴직, 해고에서 특별한 차별 없음

○ 2-11.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

○ 2-12.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제도 시행하고 있음

○ 2-13.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업무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도 시행하고 있음

○ 2-14. 연구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구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제도 시행하고 있음

○ 2-15.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제도 시행하고 있음

○ 2-16.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음

○ 2-17.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교, 문화, 권리를 존중하고 있음

○ 2-18. 해외에서 활동 시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입향순속함

표 Ⅲ-8.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고용상 비차별	1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연구원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3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4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소계		5	-	-	-	-	
고용상 남녀비차별	6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7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8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9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10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11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12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신규
	소계		7	-	-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3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업무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수정
	14	연구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구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15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소계		3	-	-	-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6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17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18	해외에서 활동 시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소계		3	-	-	-	-	
합계			18	-	-	-	-	

(3)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 3-1.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노동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노조설립을 허용함(표 Ⅲ-9)

○ 3-2. 연구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3-3. 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음

○ 3-4.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재 노동조합 대표가 없음. 비상대책위원회가 노조의견 수렴 및 결정을 상위의 연구회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공식 결정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3-5.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개의 노조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1개 노조로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음

○ 3-6.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

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고용조건은 노조 가입 여부와 전혀 상관없으며, 자유로운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3-7.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노조가입은 순수한 노동자 자유의지로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특정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3-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조대표자 및 노조 위임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음

○ 3-9.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음

○ 3-10.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연구원측은 노조대표(현재 경사연 소속 공동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3-11.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연구원은 노조대표에게 연구원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3-12. 연구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연구원은 경제상황 변화와 여건변화 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해고를 피하고 있으며, 상황발생 시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수행하고 있음

○ 3-13.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연구원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 시 원장이 대표자로서 원측의 협상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원장 불참 시는 원장의 권한을 대표한 원측 대표자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함

○ 3-14. 연구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한다.

-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연구원 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연구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Ⅲ-9.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2	연구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	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4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계		4	-	-	-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5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수정
	6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7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9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계		5	-	-	-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11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12	연구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13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연구원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14	연구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계		5	-	-	-	-	
합계			14	-	-	-	-	

(4) 분야 4. 강제노동 금지 및 노동자 보호

○ 4-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원의 의지에 반한 비자발적 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음(표 Ⅲ-10)

○ 4-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연구원은 채용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용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함

○ 4-3. 연구원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 노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어떠한 초과노동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4-4. 연구원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정신신체상 부당구속을 함으로써 강제노동을 하지 않음

○ 4-5.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원을 떠날 수 있다.

- 노동자는 자신의 책임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야근도 하고, 연구심의회 준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노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책무이기 때문이지 연구원의 강요에 의해 연구원에 남아서 야근을 하지는 않음

○ 4-6.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둘 수 있다.

- 노동자는 통상 업무연계를 위해 1달 이전에 퇴직 또는 이직의사를 밝히고 연구원을 떠날 수 있음

○ 4-7.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게 한다.

- 현재는 협력기관의 업무시간 이외 근무강요 금지가 협력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임. 「근로기준법」 등을 협력기관이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Ⅲ-10.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연구원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 노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4	연구원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5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원을 떠날 수 있다.	√					
	6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둘 수 있다.	√					
	7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게 한다.	√					신규
	8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	√					신규
	소계		8	-	-	-	-	
합계			8	-	-	-	-	

○ 4-8.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

- 협력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과도한 노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믿지만 과도한 노동 강요 금지를 협력기관에 위임한 상태임
- 국토연구원 내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원에서 공무원과의 갈등과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함

(4-1) 분야 4-1. 직장내 괴롭힘 방지

○ 4-1-1. 연구원이나 다른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한다.

- 연구원내 갑질금지는 최근의 최대 이슈로서 2019년 8월 31일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이 제정되어 갑질을 금지하고 있으며, ‘18.12 전직원 대상 “갑질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4.1 상반기 갑질실태조사 및 ‘19.12 중에 하반기 갑질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표 Ⅲ-11)

표 Ⅲ-11.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연구원이나 다른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한다.	√					신규
	2	연구원은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신규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실시된다.	√					신규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 등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					신규
	5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					신규
	6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행위자의 징계 전에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					신규
	7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취하지 않는다.	√					신규
	소계		7	-	-	-	-	
합계			7	-	-	-	-	

○ 4-1-2. 연구원은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에 감사실을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 되는 상담조직을 갖추고 있음. 비밀이 보장되는 내부 인트라넷(KIWI)을 통해 원장에게 갑질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4-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실시된다.

-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에 따라 누구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음

○ 4-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에서 갑질피해자의 근무지변경, 유급휴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4-1-5.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에서 갑질피해조사결과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지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4-1-6.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행위자의 징계 전에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 갑질피해 사실조사 이후 피해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갑질신고 사실이 없어 공식적 처분조치는 이루어진 적이 없음

○ 4-1-7.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취하지 않는다.

- “갑질신고처리등에관한기준”에 따라 갑질피해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해고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4-2) 분야 4-2.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금지

○ 4-2-1.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언어, 문자, 행동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연구원내 성폭력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음(표 Ⅲ-12)
-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을 통해 신고, 처리 및 가해자 징계 등 제반 처리를 할 수 있음

○ 이하 4-2-2 ~ 4-2-10까지 연구원은 물론 협력기관에 대해서도 성폭력 및 성희롱 금지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표 Ⅲ-12.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1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언어, 문자, 행동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신규
	2	연구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다.	√					신규
	3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신규
	4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					신규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사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등(“피해노동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신규
	6	조사 기간 동안 피해노동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신규
	7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 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					신규
	8	연구원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등에게 인사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신규
	9	연구원은 협력기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노동자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하여 해당 노동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신규
	10	연구원은 노동자가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신규
	소계		10	-	-	-	-	
합계			10	-	-	-	-	

(5) 분야 5. 산업안전보장

❍ 5-1.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연구원은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완강기 등 대피시설, 제세동기, 방독 마스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점검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표 Ⅲ-13)

○ 5-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청사 내 비상계단에 장애물은 없으며, 항시 이용 가능함

○ 5-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미세먼지 심각상황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외기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을 때는 청사관리팀에서 히터를 가동해 온도를 조절하며, 실내 전등이 이상이 있을 땐 전등을 교체하며,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비데시설도 정기점검을 받고 있음. 외주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도 영양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5-4.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안전장구와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

○ 5-5.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안전 휴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통행안전을 위한 별도의 실내 보도블록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5-6.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위험한 업무를 배당하지 않는다.

-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 및 위험사업을 하지 않도록 함

○ 5-7. 임신을 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임신한 노동자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사례는 없지만 만약 요청이 있다면 근무지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5-8.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인 통행안전을 위한 별도의 실내 보도블록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5-9. 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매년 연구원 부담으로 직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Ⅲ-13.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연구원 내 안전	1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4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소계		4	-	-	-	-	
임산부 및 장애인등 보호	5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6	연구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수정
	7	임신을 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8	장애인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소계		4	-	-	-	-	
필수장비 및 교육	9	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계		1	-	-	-	-	
피해 근로자지원	10	연구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11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12	연구원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신규
	소계		3	-	-	-	-	
합계			12	-	-	-	-	

○ 5-10. 연구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질병, 부상 시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음

○ 5-11.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질병, 부상 시 산재공단에서 산재라고 판단 시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고 있음

○ 5-12. 연구원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산업 재해 신청 시 지원하고 있음

(6)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항목의 지표는 모두 보완이 필요함(표 Ⅲ-14)

- 현재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직원의 과잉노동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 권고와 마찬가지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도 용역 업체에 과잉노동을 방지할 것을 권고함

○ '모니터링 실시' 항목의 지표는 모두 보완이 필요함

표 Ⅲ-14.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연구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연구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				
	2	연구원은 협력기관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3	연구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사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4	연구원은 협력기관과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계		-	4	-	-	-	
모니터링 실시	5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관들의 인권 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6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여부 인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수정
	소계		-	2	-	-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	연구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8	연구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9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 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10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계		2	-	-	-	2	
합계			2	6	-	-	2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지표7 ‘연구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와 지표8 ‘연구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합치함
- 지표9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 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와 지표10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해당 사항 없음

(7) 분야 7. 저작권 보호

○ 국토연구원 자체 평가에 의하면 분야 7의 저작권 관련 모든 지표는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없음’으로 평가됨(표 Ⅲ-15)

(8) 분야 8.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항목의 6개 지표 중 3개가 불합치 함(표 Ⅲ-16)

- 지표2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지표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지표5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불합치 함

○ ‘환경정보의 공개’ 항목의 2개 지표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

○ ‘비상계획 수립’ 항목의 1개 지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머지 2개 지표는 합치함

표 Ⅲ-15. 분야 7 저작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타인의 저작권 보호	1	연구원은 타인[12]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2	연구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계		-	-	-	3	-	
합계			-	-	-	3	-	

12) 연구원 직원 개인의 경우도 해당됨

표 Ⅲ-16. 분야 8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2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수정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4	연구원은 내부운영에서 뿐 아니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국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수정
	5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			
	6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소계	3	-	3	-	-	
환경정보의 공개	6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직원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수정
	7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소계	-	-	-	-	2	
비상계획 수립	8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9	연구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10	연구원은 비상시 소화기·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및 119신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법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					신규
		소계	2	-	-	-	1	
합계			5	-	3	-	3	

(9)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 2개 항목, 11개 지표 모두 합치함(표 Ⅲ-17)

표 Ⅲ-17.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1	연구원은 부적절한 연구결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수정
	2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수정
	3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체 저작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					수정
	4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연구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신규
	5	연구원의 잘못된 연구결과에 의하여 관련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결과의 수정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수정
		소계	5	-	-	-	-	
국민 사생활 보호	6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등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수정
	7	연구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					수정
	8	국민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9	국민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10	대국민 정보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11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소계	6	-	-	-	-	
합계			11	-	-	-	-	

(10) 분야 10. 기타인권 보호

❍ 3개 항목, 9개 지표 모두 합치함(표 Ⅲ-18)

표 Ⅲ-18. 분야 10 기타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정보인권 보호	1	연구원은 직원에게 경영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다.	√					신규
	2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는다.	√					신규
	3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					신규
	소계		3	-	-	-	-	
일·가정 양립	4	연구원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신규
	5	연구원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그 밖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	√					신규
	6	연구원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적정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규
	소계		3	-	-	-	-	
모성 보호	7	연구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					신규
	8	연구원은 모성 보호 지원사업 수행시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신규
	9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장한다.	√					신규
	소계		3	-	-	-	-	
합계			9	-	-	-	-	

3)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

❍ 2019년 12월 26일 인권경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최근 인권경영에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음.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를 일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상급기관 및 관리자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부터 직원과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함

-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원에서 상급기관 및 관리자와의 갈등, 업무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
- 비극의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이 필요한데, 문제 발생 시 밖으로 드러내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 연구원의 과도한 업무 압박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압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과도한 업무 관행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 직원의 과잉노동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의 위탁기관 및 관련 협력기관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갑을 관행에서 비롯된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관계 설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이미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계약서에서 '갑을' 관계 표현을 삭제하고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전례가 있음

(2016년 이전 계약서)

위 용역에 대하여 국토연구원 원장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식 보관한다.

(2016년 이후 계약서)

위 용역에 대하여 국토연구원 원장 를 "계약당사자"로 하고 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Ⅳ.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평가

1. 개요

1)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와 목적

○ 국토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 수립을 전제로 정부에 의해 발주되는 수탁과제와 연구원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수시과제, 일반사업, 기본과제로 구분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연구와 관련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이 제한되는 수탁과제는 제외함

○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또는 계획에 의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권피해를 최소화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임

2)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원칙

○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에 기반해 국토연구원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원과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

- 기관(연구원)의 특성, 평가하려는 연구사업 그리고 영향을 받는 대상의 특성에 맞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

○ 평가과정과 연구원 조직의 결합

- 연구원의 조직과 인권영향평가(과정)의 적절한 결합이, 효율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함

○ 연구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

- 연구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관이 평가 결과를 책임져야하므로, 연구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 작업을 이끌어가야 함

○ 주요 인권영향 이슈에 집중

- 평가의 초기단계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부터 가장 의미 있는 인권영향 이슈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영향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인권개선 기회 발굴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인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하여 인권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함

○ 이해관계자(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영향평가과정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 인권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은 인권영향을 초래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꺼려지는 요인일 수 있으나, 잠재적인 피해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를 발굴하고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용이하여, 오히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 투명한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인권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음

○ 미래지향적 시각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단기적 시각에서 무마용으로 소극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인권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체크사항

○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때, 각 단계 별로 확인해야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표 Ⅳ-1)

-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과제의 내용이 인권영향 피해를 실제로 유발할 수 있는지, 연구 결론이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개발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 사전 구상 단계에서는 피평가 사업의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예상되는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함
- 평가계획 수립 및 관찰 단계에서는 연구결과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수혜자와 인권영향 피해자, 예상되는 인권피해 유형, 전체적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검토해야 함
- 평가기준 정립 및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인권 피해문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자료 수집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인권영향 피해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방법, 시점, 기간 등을 검토해야 함
- 전반적인 인권영향 발생 정황과 원인 파악 단계에서는 인권영향의 발생 요인과 경로, 가장 심각한 인권영향 피해를 검토해야 함

표 Ⅳ-1.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체크사항

단계	단계별 검토사항
1. 과제선정	• 인권영향 피해를 실제로 유발할 수 있는 과제 내용인가? • 연구결론 부분이 인권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가? •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개발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인가?
2. 연구목적·연구가설 재확인 및 의 사전 구상	• 피평가 사업(과제)의 구체적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사업 결론 부분에서의 제안사항은 어떤 것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3. 평가계획 수립 및 관찰	• 연구결과가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인권영향의 피해자는 누구일 것으로 예상되는가? • 어떠한 인권피해가 예상되는가? • 전체적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가?
4. 평가기준 정립 및 자료수집	• 여러 가지의 인권 피해사항들 중 어떤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슈화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며, 연구초기부터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할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5. 이해관계자의 인권영향 피해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인권영향평가에서 이해관계자(특히 피해자)의 참여가 중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 이해관계자 참여시점 및 참여기간은?
6. 전반적인 인권영향 발생 정황과 원인 파악	• 전반적인 인권영향 발생 정황을 파악하였는가? • 인권영향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는가? • 가장 심각한 인권영향 피해는 어떠한 것인가?
7. 주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인권피해의 형태, 범위, 피해자수, 인권영향의 지속기간, 피해의 심각성은? • 한계계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가? • 나타난 인권피해 상황은 기존의 법률, 정부규정·지침 등에 위배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가? •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더라도, 사회정의상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인권피해가 발생하는가? 판단기준은?
8. 인권영향의 회피·감소·복구·구제방안 모색	• 인권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피(예방), 감소, 복구, 구제 순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한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유사한 인권피해에 대한 좋은 해결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 누가 비용을 담당할 것인가? • 인권피해상황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률규정과 정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개선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인가? 가능 또는 불가능한 이유는?
9. 과제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및 평가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피해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평가 결과가 충분히 합리적이며 객관적인가? • 제시한 인권영향 개선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 연구원 인권영향평가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주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구체적 평가 단계에서는 인권피해의 형태·범위·피해자 수·인권영향의 지속기간·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지, 피해의 내용이 기존의 법률 등에 위배되는지, 사회정의상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인권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 인권영향의 회피·감소·복구·구제방안 모색 단계에서는 가능한 방안, 해결 사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 및 정책 등을 검토해야 함
- 과제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및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는 인권영향평가에 피해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결과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지, 개선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함

3. 인권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평가

1) 국토분야 인권침해 형태 및 이해관계자

□ 인권의 정의

○ 인권의 정의는 매우 다양지만,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임

○ 인권은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즉, 존엄, 공정, 평등, 존중 그리고 독립성 등을 포함함

○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국내법 및 국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치들도 인권에 포함됨

□ 주요 사업의 인권영향평가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의 대응 범위

○ 주요 사업의 인권영향평가 작업은 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적 인권영향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그림 Ⅳ-1)

○ 유의해야할 점은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결과를 개발계획이나 정책의 형태로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물론 인권영향 피해 구제방안 등을 제시함에 있어서 인권평가자가 불충분한 법·규정 또는 정책방향(또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법·규정·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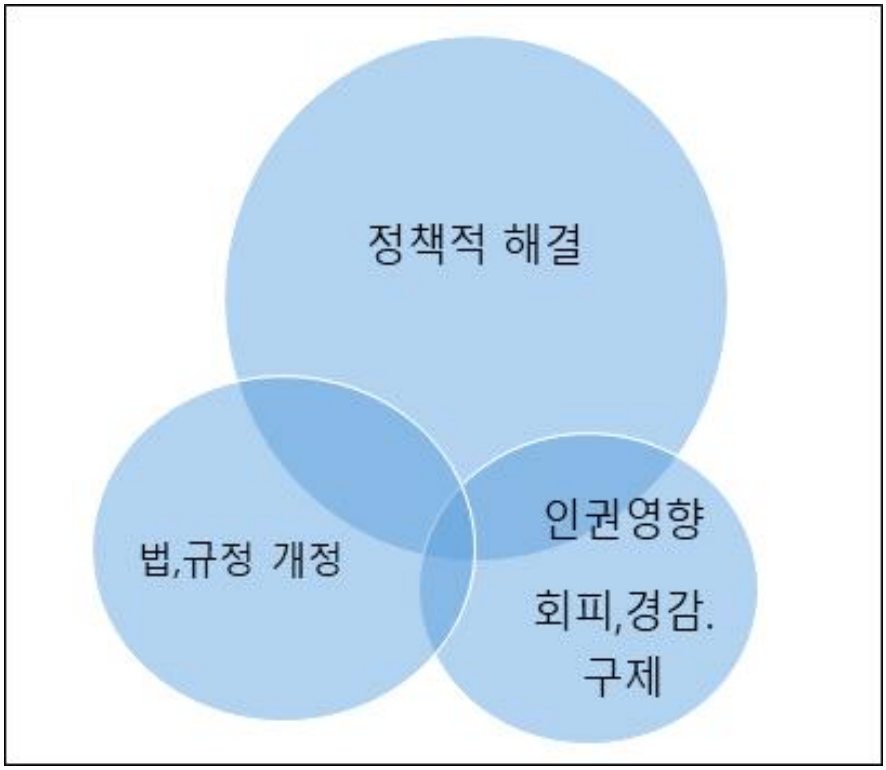

그림 Ⅳ-1. 인권영향평가에서의 부정적 영향 취급 범위

- 인권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의 보상제도와 같이 구체적인 분야의 법·규정 또는 정책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정책연구를 시행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 일반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권피해가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함
-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함
-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함

○ 평가과제 선정방법(예시)은 다음과 같음(표 Ⅳ-2)

- 각 과제의 피해 유형별 심각성 점수를 1~5점 척도 또는 유사한 스케일로 점수를 기재하여 과제별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점수평가와 더불어 각 과제의 잠재적 인권영향피해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인권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임

표 Ⅳ-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표 예시

피해유형 / 과제명	경제적 권리 침해	사회적 피해	물리적 피해	환경적 피해	문화·심리·정서적 피해	기타 피해	계
연구과제 1	점수평가	점수	점수	…	…	…	…
연구과제 2	4	4	2	3	2		
연구과제 3	2	1	…	…			
…							
…							

2) 국토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 피해 형태

❍ 국토분야에서 부당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물리적·신체적 피해, 환경적 피해, 절차상의 소외 및 부적정한 대우,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인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표 Ⅳ-3)

❍ 국토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는 재산 소유 형태, 소득계층, 가족형태, 거처형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표 Ⅳ-4)

표 Ⅳ-3. 국토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 피해 형태

구분	내용
부당한 경제적 피해	• 재산상의 피해, 금전적 피해 • 보상미흡, 보상누락, 보상의 형평성 결여 • 경제적 생존기반 상실 • 생활비용 증가 초래
사회적 측면에서의 피해	• 사회적 분리 및 낙인화 • 사회적 불평등, 형평성 문제 • 커뮤니티, 이웃관계 붕괴 • 사회적자본 수준 저하
물리적·신체적 피해	•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로의 접근성 악화 • 안전문제 초래 • 건강문제 유발
환경적 피해	• 공기, 수질 등 환경오염 • 경관 및 자연 훼손으로 인한 삶을 질 저하
절차상의 소외 및 부적절한 대우	• 부적절한 절차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제시 기회 차단 또는 부족 • 피해자 의견 무시
정서적·심리적 인권피해	• 모멸감, 자존감 훼손, 박탈감 • 불안감 초래

표 Ⅳ-4. 국토연구 관련 이해관계자의 유형 예시

구분	내용
재산 소유 관련 이해관계자	• 토지, 건물(주택포함) 소유자, 어업권 등의 보유자 • 임대인, 임차인
소득계층에 따른 이해관계자	•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 근로소득자, 실업자, 은퇴자
가족형태	• 혈연 보통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고령층, 청년층) • 소년소녀가장
거처형태	• 단지형 공동주택, 개별 공동주택,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 비주거형 건물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홈리스

3) 인권영향평가 방법

□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다양한 2차 자료(Secondary Data) 수집

- 센서스 등 통계청자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
- 관련 보고서

○ 설문조사

-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조사를 시행할 경우, 인권피해에 관한 설문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층면접조사

- 인권피해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조사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

○ 주민간담회 등

□ 평가 방법

○ 피해범위를 평가함

- 피해자수, 피해자비율, 피해지역의 범위를 평가함

○ 피해의 규모(심각성 평가)를 평가함

- 정량적 평가 : 가능하면 피해규모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방법을 채택하되,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경우 계량분석기법도 활용 가능함
- 정성적 평가 : 피해사례를 정성적으로 서술함

○ 피해의 지속성을 평가함

- 인권영향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는 피해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주요 피해이슈에 집중하여 복합적인 유형의 인권피해가 발생할 경우, 1단계로 관련 피해내용을 모두 언급하되, 본격적인 심층 분석은 가장 중요한 피해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

○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평가과정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함

○ 취약계층의 피해상황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고령자·아동·장애인·편모가정·저소득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피해에 특히 유의해야함

□ 평가 시기

○ 평가 시기는 가능한 과업착수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업종료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과업수행 초기부터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피해대상자들과 주변의 여건 등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계획에 따라 수집하고, 피해발생을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 평가 시기 인권피해의 회피·감소·복구·구제방안 우선순위

○ UN 등 인권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권피해대책으로서 우선순위를 “회피(예방) → 감소 → 복구 → 구제”로 제시하고 있는바 연구원의 영향평가에서도 같은 원칙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피’란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감소’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임
- ‘복구’란 부정적 영향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뜻임
- 마지막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임

□ 피드백과 재평가

○ 인권영향 파급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는 과업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 내용과 형태

○ 주요 연구사업의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연구원 인권경영인권보고에서의 체크리스트의 형태보다는 서술형 보고서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사업의 개요(배경과 목적)에 이어, 연구사업의 주요 제안사항과 관련한 인권피해자, 피해내용, 그리고 인권피해의 회피, 축소,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Ⅳ-5. 인권영향 상황 및 대응조치 요약(안)

구분	이해관계자	피해 내용	대응 조치
1			
2			
3			
:			
종 합			

- 이어서 본 사업과 관련된 인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단하게 정책건의 사항도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요약 표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표 Ⅳ-5)

4. 연구과제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주택·주거권 관련 과제수행 리스트 평가(2010~2019년)

□ 과제 리스트 현황

❍ 국토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675개이고, 그 중 주택 및 주거권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69개임(표 Ⅳ-6)

- 주택·토지, 주거복지, 부동산 등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행한 리스트를 검토하여 69개의 과제목록을 선정하였음

❍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청년 등 정책 우선순위가 되는 취약계층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25개임

-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2010)」, 「저소득층 독거 노인가구의 주거지원 방안(2012)」,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2016)」 등임
- 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연구는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5)」, 「청년 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2016)」,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2017)」 등임
-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삶의 질 구성요소와 실태 연구(2013)」,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2015)」 등임
- 주거비부담 관련 연구는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2013)」,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8)」 등임
- 기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2012)」, 「주

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2014)」,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201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연구(2019)」 등을 수행함

□ 제안 권고

○ 연구 과제 선정 시 평가 항목에 인권 관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과제 수행 결과로 도출되는 계획이나 정책이 이해관계집단의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중립적인 영향을 과제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과제 선정 시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함

○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큼

-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이외에도 최근 청년, 아동, 이주민, 다문화, 1인 가구 등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과제에서는 소수를 차지함
-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지만 대상가구에게 정보전달이 안 되거나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019년 10월 24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부족한 방수·면적 등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과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시하는 주거 정책이 가장 보편적인 포용정책임. 이에,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의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제의 확대가 필요함

○ 해외에서는 공공 정책에 대한 결과 기반의 인권영향평가(OPERA)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 주거권의 실현에는 예산 등 자원 배분이 필수적임. 향후 주거권 실현에 있어서 세금 및 예산 정책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 정책에 의해 경제·사회적 권리 박탈이 발생하고, 영속화되며,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 정책을 인권에 기반해서 평가할 때에는 특히 책임성(account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실현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집중해야 함
- 특히 국가의 점진적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최대 가용 자원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함

표 Ⅳ-6. 국토연구원의 주택·주거권 분야 과제 수행 리스트(2010~2019년)

구분	과제명	담당부서	연구연도
1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2010
2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3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주거복지전략센터	
4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5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6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7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	주거복지전략센터	
8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ㅡDSS) 구축(1)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11
9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0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Ⅰ)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11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방안 연구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12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13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Ⅱ)	주택토지연구본부	2012
14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 지원시스템(Repㅡ DSS) 구축(Ⅱ)	주택토지연구본부	
15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Ⅰ)	주택토지연구본부	
16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17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18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9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0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주택 정책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1	Strategy and Policy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and Community for Urban Pool in Developing Countries	도시연구본부	
22	저소득층 독거 노인가구의 주거지원 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23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24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구축(1)	주택토지연구본부	2013
25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2)	주택토지연구본부	
26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7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삶의 질 구성요소와 실태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8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29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30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장위기 예측모형 개발	주택토지연구본부	
3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과 평가 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32	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33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014
34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주택토지연구본부	

35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36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37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38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주택토지연구본부	
39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부동산시장연구센터	
40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15
41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42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43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44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45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46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16
47	주거지원 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48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49	청년 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50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2017
51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52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53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주택정책연구센터	
54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55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56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2018
5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58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59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60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61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19
6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63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64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주택정책연구센터	
65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관리 정책 추진방향	주택정책연구센터	
6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주택수요 추정 및 향후 정책방향	주택토지연구본부	
67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거래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주택토지연구본부	
68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주택토지연구본부	
69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주택토지연구본부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2) 2019년 완료된 과제에 대한 인권관점에서의 검토

□ 과제 개요

○ 제목 : 주거권 실현을 위한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 연구 목적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이론연구
- 통계분석
- 주거권 사례와 주거정책의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관련하여 외국 사례 검토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면담
- 지자체 실태분석과 사례 조사, 면담 조사
- 시도 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자 면담 및 자문회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처 공무원 의견 수렴

○ 결론 및 정책 제안

-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과 협의 과정을 공식화하는 방안. 이를 통해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소요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 이를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주거복지정책의 전반을 개편. 지방이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에서 지방의 주거복지 사업 집행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 취약계층 우선 주거지원 기준 마련 등
- 주택개량의 정책화와 역할분담 구축
- 주거정책 지방화 강화를 위한 주거부문 포괄보조금 시범 사업

□ 인권관점에서의 검토

○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드문 연구임. 특히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수준(level) 정부의 주거권에 있어서의 적극적 의무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함

- 국제적인 인권관점에서 보면 인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의무 주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포함됨
- 주거문제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주거권 실현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주거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거권 실현 노력은 서울, 경기도 시흥, 전라북도 전주 등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사회주택 등의 공급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지방정부도 반대에 나서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하게 진단함

- 지방정부의 주체 역량, 법률과 조직 등 기반 현황, 특화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방화가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제도화 되어 있는 해외 사례는 시사점이 큰데,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

- 지역별로 사회주택의 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 주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권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 프랑스의 주거대항법(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DALO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취약계층 우선의 주거지원이라는 원칙과 관련되는 의미있는 사례 연구임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바우처,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 홈(HOME)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시사점이 큼

○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큰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법률, 예산, 조직에 의해 구체화되고 제도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결과 기반의 인권영향평가(OPERA)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동원 가능한 최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 의하면, 정부의 전략은 단지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됨.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함

3) 2020년 수행 예정 과제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1)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및 가구의 구조가 급변하는 추세임
- ○ 급변하고 있는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거특성의 변화를 예측해 주거정책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예상되는 제안사항(결론)

- ○ 1인 가구, 고령가구 급증,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의 전망에 따른 미래형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함
- ○ 중앙집중형 주거정책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유연한 주거정책의 전환을 제시함

□ 주요 이해관계자

- ○ 1·2인 가구
- ○ 고령가구
- ○ 외국인가구 등 취약가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 현재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 및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정립은 필수적인 과제임
- ○ 특히 기존의 4인 가구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주거형태 및 주거정책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기반 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재정립이 필요함
- ○ 이에 주거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자하는 본 연구는 인권 향상이라는 관점에 기반해 연구가 진행될 경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가구의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이해관계자 설정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본 연구는 전체 인구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해, 기본적인 인구 및 가구는 물론 1·2인 가구, 청년가구, 고령화 변화 등을 정리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변화와 외국인 가구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적인 주택 수요를 전망하고자함

○ 본 연구 대상 설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가구 포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고[13], 문화 및 산업경제 시스템 변화에 따른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분석 대상 가구임

- 한국의 「주거기본법」을 비롯한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가구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이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해 채택된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외국인 거주자, 이주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주거에 대한 차별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함
-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향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등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외국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또한 성소수자 가구, 비혼, 비혈연 가구 등 새로운 가족구성권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변화된 가족 가치와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변화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함

- 2019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3%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며, 비혼동거에 대해 20대(89.7%), 30대(81.0%), 40대(74.3%)의 순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임[14]
- 인권의 주요 가치인 '비차별성'의 관점에서도, 주거권 실현에 있어 미래 가구 변화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게 될 비혼·비혈연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방향제시가 필요함

□ 인권피해 회피·감소·구제 방안

○ 주거패턴 및 주거수요 예측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서 인구학, 미래학, 주거정책, 주거복지 등 다학제적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

13) 2018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이 전년 보다 8.5% 증가함
14) 김순남, 2019.10, '가족구성권과 관계의 집으로서의 주거권', 제6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수렴이 필요함

○ 인권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족 구성권 변화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 및 관련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이 필요함

(2)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아동,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등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으나 부처 간 지원정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해,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부처 간 정책프로그램 연계성 강화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제고 및 정책의 효과성 증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제안사항(결론)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공급주택별, 추진사업별 현황분석을 통한 협업 모델을 제시함

□ 주요 이해관계자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민

○ 관계 부처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도시와 주거정책에 있어서 '포용성'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가치임.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포용성 실현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과 삶의 질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인권 실현에 의미가 있음

- 한국정부도 최종 협약문에 서명한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포용성(포용도시)'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음
-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 주거와 관련된 SDGs 11번 목표로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빈민가(슬럼 slum) 개선(11.1)'을 설정하고, 관련 지표로는 '빈민가(슬

럼), 비공식 주거지(임시 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11.1.1)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 간의 정책프로그램의 연계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은 목적 달성의 정당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하지만 제도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부처 간 연계성 강화가 '중복지원 방지'라는 측면이 강조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수급 프레임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취약계층의 삶을 빈곤의 틀에 가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지원 확대 방향 제시가 수반되어야 함

□ 인권피해 회피·감소·구제 방안

○ 기존의 연구가 각각의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주거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상 층의 인권침해 요소는 총체적임. 본 연구의 부처 간의 연계 모색은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주거의 권리라는 주거의 인권적 실현에 있어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의 가치임. 연구 추진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 등이 고려되어야 함

(3)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강화 방안」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입지 특성별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상되는 제안사항(결론)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이 불일치함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대한 대안 및 주거부담지표 활동한 입지특성별 대

안적 입지를 탐색함

□ 주요 이해관계자

○ 쪽방·고시원, 비닐하우스촌, 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자

○ 반지하, 옥탑, 기타 불량주택 등 주택이지만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 거주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본 연구는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파악해, 입지 특성별로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쪽방·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생활권 유지의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취약계층 당사자의 현실과 욕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미가 있음

□ 비적정주거에 대한 접근 필요성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

○ 본 연구는 기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주택과 비주택의 경계에 있는 열악한 거처를 고려한 비적정주거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주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념적 확장 필요성 제기 역시 의미가 있음

- 면적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로 구조·성능·환경의 취약함에서 비롯되는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양호한'이나 '현저한'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서 반지하주택 등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인권피해 회피·감소·구제 방안

○ 본 연구가 비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불일치 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구조와 주거이력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의 요소(사회권 일반 논평 4 :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뿐만 아니라 부담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미를 지님

○ 현재 비주택의 입지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공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사회서비스, 사회적 관계)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밀집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의 경우 장소기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동질적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연구 추진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심층인터뷰 등을 수행 계획은 연구의 인권적 측면과 정당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4) 「지방도시 주거지 재생을 위한 도시·주택 정비방안」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신규택지용지 공급 위주의 도시계획과 교외지역으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심쇠퇴를 우려함

○ 지방도시에서의 사업성 부족, 높은 고령자 주민비율,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개선과 관련 계획체계 개선이 필요함

□ 예상되는 제안사항(결론)

○ 관련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함

○ 주거지재생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함

- 공공지원 확대,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 및 관련 규제완화(건폐율, 접도율, 최소필지 규모, 주차장설치, 대지 내 공지 등)

□ 주요 이해관계자

○ 도심 쇠퇴지역 주민

- 고령가구
- 노후주택 세입자

○ 도심지역 상점·가게 운영자 등 소상공인

○ 지방도시 내 신규주택 수요가구

○ 도시 관리자(지방자치단체)

□ 인권영향평가

○ 도심 구시가지 거주(가옥주, 세입자) 고령가구

- 지방도시의 도심지역 고령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산보유수준

도 낮아,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부과될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비자발적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주거이동 후 주거수준도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철거 재개발(또는 개별재축) 뿐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의 경제적 부담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가구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함

○ 도심지역 주택세입자

- 도심지역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세입자의 경우도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아 철거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거주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도심지역 상점·가게 운영자 등 소상공인

- 도심지역 거주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구매력이 약하고, 많은 재화를 소비할 필요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상점·가게도 쇠퇴하게 되고 점차 도심 쇠퇴지역을 떠남에 따라 젊은 계층의 도심 주거지 유입에 장애요인이 되어, 결국 도심지역의 공동화와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도심재생사업은 도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긍정적인 기회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영세한 상가세입자의 경우 재생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지방도시 내 신규주택 수요가구

- 지방도시의 신규주택 수요자들은 도심 내 노후주거지 보다는 도시외곽에 입지한 신규개발지의 공동주택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외곽지역 개발을 억제할 경우, 분양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단지형 공동주택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신규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주거선택의 폭이 넓어, 절박한 사정의 취약계층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도시관리자(시정부 및 전체 도시민들)

- 도심지역의 쇠퇴와 공동화는 도시공간구조를 왜곡시키고, 도시 관리 상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관리 차원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공동화현상을 지연시키고, 쇠퇴한 도심지역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만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거필지의 조건, 건축규제, 접도율, 주차장 기준 등을 무분별하게 완화시킬 경우, 해당 지역은 결국 입지경쟁력을 잃게 되어 슬럼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도시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

하게 될 것임

□ 인권피해 회피·감소·구제 방안

○ 도시 관리 차원에서 도심공동화를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도심주거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가구, 저소득 주택세입자, 영세 상가세입자 등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저가의 상가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단기적 시각에서의 섣부른 규제완화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 근린공원 조성, 각급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확충하여 거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을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가능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소유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부동산 자산 소유 편중에 따른 불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 가계 자산 중 비금융 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이 그 대부분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수혜가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됨
- 이와 같은 경향이 소득과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부동산 자산 소유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분배정책을 부동산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득 안정 및 재분배 측면에서 정책 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제안사항(결론)

○ 단기 과제로 현행 부동산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공공기여 방식 등과 관련한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함

○ 장기 과제로 소득 재분배(국토보유세, 토지배당, 기본소득 등 포함)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책과제(계획이익 환수제도, 지역자산화 등의 정책수단 도입 가능성과 도입 방안 등)를 검토하여 도입 가능한 정책을 제안함

□ 주요 이해관계자

○ 다주택·고가 부동산 보유자

○ 1주택 보유자(고가 주택 보유자 제외)

○ 무주택자

- 주택 매수가 가능한 중소득층 이상의 무주택자
- 주택 매수가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자

□ 인권영향평가

○ 다주택·고가 부동산 보유자

-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은 주로 주택 등 부동산 소유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주택·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로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양도 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부담 능력을 갖춘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주거권, 기타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고령 기타의 사유로 수입이 제한적이지만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담 증가 시 고가 주택인 1주택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있음. 그러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다양하므로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임

○ 1주택 보유자(고가 주택 보유자 제외)

-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의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고가 주택 아닌 1주택의 취득, 보유 또는 양도에 불합리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거 인권 침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정책이 아닌 이상 주거 인권이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재개발·재건축 기타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그 밖의 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정도는 사업의 수익성, 속도, 진행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그 방식과 부담의 정도, 탄력적 조정 수단이 매우 중요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의 주거의 질 향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부담이 과소하여 개발이익 등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당해 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주택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켜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서울 주요 지역과 서울 기타지역, 서울과 대도시, 수도권과 지방 등 사이에 현격한 사업 환경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금 증가로 인한 조세·기금 확충 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

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증가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 등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주택 매수가 가능한 중소득층 이상의 무주택자

- 주택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정상적인 조세·기타 부담금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1주택의 취득·보유가 어려워지는 정책이 아닌 이상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이 주택 가격 상승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지는 주택 시장의 여건 및 정책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다만 소유불평등 완화 방안 실시로 주택 소유 집중이 완화되어 주택 취득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정책·분양 내지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지원정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따라 주택 취득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등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소득 및 자산 증가에 따라 주택 취득가능성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가구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현재 또는 장래의 주거 안정 및 인권 증진,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 구조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매수가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자

-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인해 조성되는 재원은 일정한 금융지원 등으로도 주택 취득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지원정책, 주거급여나 주거바우처 등을 실시할 정책 여력 확대 등으로 주거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은 주택 취득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주거 안정 및 인권 증진과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 구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인권피해 회피·감소·구제 방안

○ 인권 침해 가능성의 회피·감소와 관련해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의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관련해 ① 고가 주택 아닌 1주택의 취득, 보유 또는 양도의 어려움으로 주거 인권 침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침해가 발생할 수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개발 사업의 부담 증가로 주거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됨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나 공공기여의 정도가 지나치게 낮아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해당 도시의 다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주거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 외

에는 소유 불평등 완화 방안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회피·감소·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고 사료됨

- ❍ 인권 피해의 회피·감소 수단은 정책의 내용상 경제적 부담 수준이 직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부담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 및 법률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 인권 피해의 구제 수단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적 구제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나 새로 신설되는 조세·부담금 등의 제도의 경우 법률 내에 기존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수단을 함께 도입해야 할 경우가 있음. 공공기여는 대부분 재량행위인 인·허가 처분의 부관의 형태로 부담시키므로 이와 관련한 무효·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함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11.29일자,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일자,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개인정보보호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Aberdeen City Council, 2008, *Equality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the Guide.*
-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2012, *Assessing fiscal Polic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2013, *Conducting an Effect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teps, and Examples.*
- DIHR(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6,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 Harrison and Stephenson, 2010, *Human Right Impact Assessment: Review of Practice and Guidance for Future Assessments,*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부록] 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 1.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되었다.						
	3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원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소계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7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10	연구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11	협력기관[15]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소계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3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14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15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16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7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성과	18	연구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1	인권경영 성과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22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소계							
구제절차 마련	25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29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계							
합계								

15) 협력기관이라 함은 국토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인쇄소 등을 말함

표 2.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고용상 비차별	1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소계							
고용상 남녀비차별	6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7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8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9	연구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10	연구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1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12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규
	소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3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업무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수정
	14	연구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구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15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소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6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17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18	해외에서 활동 시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소계							
합계								

표 3.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2	연구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계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5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수정
	6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7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9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계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연구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13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연구원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14	연구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계							
합계								

표 4.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연구원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 노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4	연구원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원을 떠날 수 있다.						
	6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둘 수 있다.						
	7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게 한다.						신규
	8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협력기관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						신규
		소계						
합계								

표 5. 분야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연구원이나 다른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한다.						신규
	2	연구원은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신규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실시된다.						신규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 등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신규
	5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신규
	6	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행위자의 징계 전에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신규
	7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취하지 않는다.						신규
		소계						
합계								

표 6. 분야 4-2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금지	1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언어, 문자, 행동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규
	2	연구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다.						신규
	3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는 직원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조직을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신규
	4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지체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신규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사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등(“피해노동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신규
	6	조사 기간 동안 피해노동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규
	7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 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						신규
	8	연구원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등에게 인사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규
	9	연구원은 협력기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노동자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하여 해당 노동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규
	10	연구원은 노동자가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협력기관,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신규
		소계						
합계								

표 7.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연구원 내 안전	1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4	연구원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소계							
임산부 및 장애인등 보호	5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6	연구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7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계							
필수장비 및 교육	9	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소계							
피해 근로자지원	10	연구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11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12	연구원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
	소계							
합계								

표 8.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연구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연구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2	연구원은 협력기관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3	연구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사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4	연구원은 협력기관과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소계						
모니터링 실시	5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관들의 인권 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6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여부 인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정
		소계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	연구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연구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9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 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10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소계						
합계								

표 9. 분야 7 저작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타인의 저작권 보호	1	연구원은 타인[16]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연구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소계						
합계								

16) 연구원 직원 개인의 경우도 해당됨

표 10. 분야 8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2	연구원은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수정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4	연구원은 내부운영에서 뿐 아니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국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수정
	5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6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소계							
환경정보의 공개	6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직원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수정
	7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소계							
비상계획 수립	8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9	연구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0	연구원은 비상시 소화기·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및 119신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법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신규
	소계							
합계								

표 11. 분야 9 소비자(국민)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1	연구원은 부적절한 연구결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수정
	2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수정
	3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체 저작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수정
	4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연구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신규
	5	연구원의 잘못된 연구결과에 의하여 관련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결과의 수정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수정
		소계						
국민 사생활 보호	6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등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정
	7	연구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정
	8	국민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9	국민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10	대국민 정보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소계						
합계								

표 12. 분야 10 기타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정보인권보호	1	연구원은 직원에게 경영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다.						신규
	2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는다.						신규
	3	연구원은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규
	소계							
일·가정양립	4	연구원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규
	5	연구원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그 밖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						신규
	6	연구원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적정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소계							
모성 보호	7	연구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신규
	8	연구원은 모성 보호 지원사업 수행시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신규
	9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장한다.						신규
	소계							
합계								